



서울지방고용노동청			
서울지방고용노동청	02) 2231-0009	서울남부지청	02) 2639-2100
서울강남지청	02) 584-0009	서울북부지청	02) 950-9880
서울동부지청	02) 403-0009	서울관악지청	02) 3281-0009
서울서부지청	02) 713-0009		

중부지방고용노동청			
중부지방고용노동청	032) 460-4545	안산지청	031) 412-1992
인천북부지청	032) 540-7910	평택지청	031) 646-1114
부천시청	032) 714-8700	강원지청	033) 269-3551
의정부지청	031) 877-0009	강릉지청	033) 650-2500
고양지청	031) 931-2800	원주지청	033) 769-0800
경기지청	031) 259-0204	태백지청	033) 552-0009
성남지청	031) 788-1505	영월출장소	033) 374-0009
안양지청	031) 463-7300		

부산지방고용노동청			
부산지방고용노동청	051) 853-0009	울산지청	052) 272-0009
부산동부지청	051) 559-6688	양산지청	055) 387-0009
부산북부지청	051) 309-1500	진주지청	055) 752-0009
창원지청	055) 239-6500	통영지청	055) 650-1951

대구지방고용노동청			
대구지방고용노동청	053) 667-6200	구미지청	054) 450-3500
대구서부지청	053) 605-9000	영주지청	054) 639-1111
포항지청	054) 271-6700	안동지청	054) 851-8000

광주지방고용노동청			
광주지방고용노동청 (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)	062) 975-6200 (064-728-6100)	군산지청	063) 452-0009
전주지청	063) 240-3400	목포지청	061) 280-0100
익산지청	063) 839-0008	여수지청	061) 650-0108

대전지방고용노동청			
대전지방고용노동청	042) 480-6290	충주지청	043) 840-4000
청주지청	043) 299-1114	보령지청	041) 931-6640
천안지청	041) 560-2800	서산출장소	041) 661-5630

## 07 |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

2021년도 최저임금 위반 예시

### 예시 시간급인 경우 HOUR

- 시간급 8,700원을 받는 경우



**설명**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,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

### 예시 일급인 경우 DAY

-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9,600원을 받는 경우



**설명** 69,600원 ÷ 8시간 = 8,700원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,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

### 예시 주급인 경우 WEEK

- 1일 4시간, 1주(5일) 간 총 20시간 근로(개근)하고 주급 208,800원을 받는 경우



**설명** 208,800원 ÷ 24시간(1주 20시간+유급휴휴 4시간) = 8,700원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,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

※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

### 예시 월급인 경우 MONTH

- 1주 40시간(주 5일, 1일 8시간)을 근로하고 월급 1,818,300원을 받는 경우



※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=약 209시간  
{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+유급휴휴 8시간)×365÷7}÷12월 =약 209시간

- 1주 44시간(월~금 8시간, 토 4시간)을 근로하고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) 월급 1,966,200원을 받는 경우



※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=226시간  
{(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+유급휴휴 8시간)×365÷7}÷12월 =약 226시간

### 주휴수당 알아보기

주휴수당이란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. 주5일,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,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www.minimumwage.go.kr](http://www.minimumwage.go.kr)

#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,720원



#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## 시간급 8,720원



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

상담 : 국번없이 1350

위반신고 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

### 01 |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▶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▶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·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등)는 모두 적용됩니다.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# 02 |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- ▶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(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)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  - ※ 다만,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[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 노무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]는 수습여부·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100%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#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- A**
  -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
  -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

- 통화 이외의 것(현물)로 지급하는 임금 →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 임금 산입
-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→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(2024년부터는 전부산입)
-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·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,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- ①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%(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)
  - ※ '최저임금 월 환산액'이란?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(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 유급 주휴 8시간,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약 209시간일 경우 : 1,822,480원)
- ②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

### 03 |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
**알려야 할 내용**

- 최저임금액
-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
-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-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

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 04 |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05 |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#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(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)의 의견청취 필요



### 06 |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,105,000원을 받는 경우

월급 명세서		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	
기본급	1,500,000원	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	직무수당	150,000원
교통비	100,000원	상여금	0원*
식대	100,000원	식대·교통비	145,320원**
시간외수당	130,000원		
상여금	125,000원		
<b>계</b>	<b>2,105,000원</b>	<b>계</b>	<b>1,795,320원</b>

※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 (1,500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)

\* 상여금 125,000원 중 2021년 월 환산액 1,822,480원의 15%(273,372원) 초과금액

\*\* 식대·교통비 200,000원 중 2021년 월 환산액 1,822,480원의 3%(54,674원) 초과금액

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
$$1,795,320원 \div \text{약 } 209\text{시간} = 8,590 < 8,720\text{원}$$

**최저임금 위반**

####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

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[www.minimumwage.go.kr](http://www.minimumwage.go.kr)

'최저임금 모의 계산기'를 참고하세요.

